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 설명서

*본 설명서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작성된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대상이 실물(Physical goods)인만큼 그 구조나 위험 등에 있어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본 설명서 및 관련 법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현물 거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금현물 거래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금 현물	<p>금현물은 금지금(金地金) 중 한국거래소가 정한 품질 및 외형조건에 만족하는 순도 99.99%, 중량 1kg 또는 100g 인 골드바(Gold bar)를 말합니다.</p> <p>품질인증기관(한국조폐공사)의 기술요건 심사 및 한국거래소의 외형요건 심사 등을 거친 생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골드바 또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해외 브랜드(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의 골드만을 거래합니다.</p>
------	--

■ 유사상품과의 비교

		KRX 금시장	은행 골드뱅킹	금펀드
거래단위		1g 단위	0.01g	상품별로 상이
가격		공정가격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시간 가격)	고시가격 (원화환산된 국제가격을 고려한 은행고시가격)	상품별로 상이
장내거래	수수료	온라인수수료 기준 0.284%	통장거래 시 매매기준율X1%	선취수수료 1~15%
	세금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10%) 면제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
실물인출	인출비용	10,000원+ 인수도 단위당 20,000원	매매기준율의 4~5%	실물인출불가
	VAT	거래가격의 10%	거래가격의 10%	
금인출		증권사 지점에서 인출가능 (약 2일 소요)	은행영업점에서 인출가능 (약 1주일 소요)	

■ 민원 및 상담 연락처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상담센터(1588-0365)로 문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hansec.com>)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고객님께서서는 상담 내용 및 이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해당 상품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있을 경우 당사 MTS 및 홈페이지 상의 전자민원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소비자보호부(02-3772-3000)** 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의 위험성

1. 가격변동 위험

- ▶ 금융투자상품과 같이 해당 금지금(골드바)의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금의 화폐적 기능에 따른 위험

- ▶ 일반적으로 금은 과거 화폐적 기능을 담당하여 국내외 경제급변상황에서 중요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금가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II. 금 현물시장 개요

1.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본 설명서 상의 금 현물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KRX금시장"이라 함)을 의미하며,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일반회원(투자중개업자; 증권사·선물사)에 대한 매매거래 위탁을 통해 동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

2. 주요 거래제도

가. 매매거래 대상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항에 따른 금지금(金地金) 중 한국거래소가 정한 품질 및 외형요건을 만족하는 순도 99.99%, 중량 1kg 또는 100g인 골드바(Gold bar)를 말합니다.
- ▶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생산하거나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수입한 금지금(골드바)로서 순도, 중량, 브랜드, 제조일련번호 등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 골드바(Gold bar) 품질관리

■ 국내에서 생산된 골드바 : 품질인증기관(한국조폐공사)의 기술요건 심사 및 한국거래소의 외형요건 심사 등을 거친 생산업자가 생산한 골드바만 거래

■ 해외에서 수입되는 골드바 :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해외브랜드(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의 골드바만 거래

나. 매매거래단위, 호가수량단위, 실물인출단위

- ▶ 매매거래단위 및 호가수량단위는 **1g**이고 호가가격단위는 **10원**이며, 1g당 원화(예 : 50,000원)로 가격을 표시하고 1회에 **최대 5,000g(5kg)**까지 호가가 가능합니다.
- ▶ 실물인출단위는 **100g 또는 1kg**입니다.

다.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시간

- ▶ 매매거래시간: **09:00 ~ 15:30**
호가접수시간: **08:30 ~ 15:30** (매매거래시간 개시 30분 전부터 장종료시까지)
- ▶ 매매거래 개시 전 30분간 시가단일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를 받고 매매거래 종료 전 10분 동안 종가단일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를 받으며, 그 이외에는 접속매매 체결을 위한 호가를 접수 받습니다.

라. 호가의 종류 등

- ▶ 호가는 **지정가호가**(종목.수량.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만 가능하고 전량충족조건(FOK : Fill or Kill) 또는 일부충족조건(IOC : Intermediate or Cancel)의 호가조건 부여도 가능합니다.
- ▶ 호가는 접수 시점부터 매매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장종료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 ▶ 금 실물사업자의 생산 등을 위해 필요한 즉시 수요를 고려하여 단일 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 한하여 금 실물사업자에게 동일한 가격에서 우선 체결권을 부여합니다.

마. 호가의 제한

- ▶ 호가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상하 10%**이고 **기준가격은 전일 종가**이며 전일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기준가격이 됩니다.
- ▶ 전산시스템 장애 또는 매매거래 폭주로 매매거래가 중단될 경우에는 모든 호가접수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바. 매매체결방식

- ▶ 시가.종가 결정시 및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시 최초 가격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방식으로 체결되고, 그 이외의 매매거래는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접속매매)방식으로 체결됩니다.
- ▶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서는 가격.매매목적.시간우선의 원칙,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서는 가격.시간우선의 원칙으로 체결됩니다.

사. 결제방식

- ▶ 매매거래 후 금 실물이 필요한 금 실물사업자의 참여에 따라 금 현물시장의 **결제일은 매매거래가 체결된 당일**이며, **오전 및 오후 2회(11:30, 17:00)**로 나누어 결제합니다.
- ▶ 결제 후 매수자는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금지금(골드바)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 매도자는 현금을 이체받게 됩니다.

아. 실물 인출

- ▶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금지금(골드바) 중 본인의 지분에 대해 실물인출 단위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 : 100g, 200g, 1kg, 2kg)
- ▶ **당일 13시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시간까지 실물 인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일 오후부터 인출이 가능**(서울지역에서 인출하는 경우에 한함)합니다.
- ▶ **상기 시간 이후에 실물 인출을 신청**하거나 지방에 소재하는 한국예탁결제원 지원을 통하여 인출하는 경우 **다음날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
- *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한번 인출된 금지금(골드바)은 다시 입고하여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시킬 수 없습니다.

3. 거래방법

가. 주문의 방법

- ▶ 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시장과 동일하게 전자통신(회사와 전자통신방법에 따른 계약을 사전에 체결한 경우 HTS, 인터넷 등), 전화, FAX, 문서 등의 방법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 ▶ 금 현물시장에서의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적격금지금생산업자 및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매도한 금지금(골드바)만 거래되므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매도할 수 없음에 따라 **최초 매매 거래는 매수부터 가능합니다.**

나. 위탁증거금 납입

- ▶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전액 회사에 예탁하여야 하고(**현금 위탁증거금률 100%**),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 중인 금지금(골드바) 한도 내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4.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조세 관련 유의사항

가. 금 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

- ▶ 금지금(골드바)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1항2호에 따라 **금 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나. 금 실물 인출 시 부가가치세 납부

- ▶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본인 소유의 금지금(골드바)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공급가액(평균매수단가에 실물 인출 수량을 곱한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해 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회사에 **주문.체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위탁수수료 및 실물인출 시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타

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

- ▶ 회사는 위탁자로부터 주문수탁 및 금지금(골드바) 실물 인출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당사 수수료율

당사 홈페이지 (<http://www.shinhansec.com>)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 > KRX금 참조

*부가세 10%별도, 유관기관수수료 포함

매매수수료	On-line	매매금액의 0.284%
	Off-line	매매금액의 0.534%
출고수수료	예탁원 반환수수료	금지금 개수 당 20,000원
	출고수수료	건당 10,000원

<출고수수료 예시>

미니금 100g 종목을 500g 보유한 고객(평균단가 58,586.4원)이 전량 출고 신청한 경우

- ▶ 실물인출 시 부가가치세 : 수량 500g X 평균단가 58,586.4원 X 10% = 2,929,300원
- ▶ 예탁원 반환수수료 : 100g단위로 출고되므로 5개 X 22,000원(부가세포함) = 110,000원
- ▶ 출고수수료 11,000원(부가세포함)
- ▶ 총수수료 : 실물인출 부가가치세 + 예탁원반환수수료 + 출고수수료 = 3,050,300원

나. 장외 계좌간 대체 금지

- ▶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이외에 타인계좌로의 계좌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

-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